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- 96호

「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,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##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폐지이유

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(2008. 3. 25.)에 따라 조례 폐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

### 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10. 12. ~ 2017. 10. 16. (5일간)

### 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pjw1028@korea.kr](mailto:pjw1028@korea.kr)

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
3) 팩스 : 061-749-477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

#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·의무는 순천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  
②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17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순천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.

[참고자료]

##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기반시설"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"기반시설부담금"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
### 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

제3조(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한다.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부대비용 등으로 한다.

제6조(부담금의 사용제한)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 및 관리)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조례 제884호, 2006.09.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